



“시민이 행복하고, 지속 발전하는 희망기업”

서울에너지공사

받는곳 내부결재
(경유)

제 목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안전관리규정 제정 보고

1. 관련근거

- 가. 환경안전-658(‘17.9.6)‘집단에너지공급사업 안전관리규정(안) 보고’
- 나. 전략기획-2472(‘17.10.25)‘제11회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’

2. 주요내용

- 가.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안전관리규정 제정(안) 주요골자
 - 총칙, 안전관리체계, 안전교육, 안전을위한 순시,점검,검사 및 기록
 - 열공급시설의 운전조작, 열수송관의 공사방법, 열수송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지정 및 안전관리 체제
 - 제해 기타 비상시의 조치, 열공급시설의 경비, 안전기록, 기타
- 나. 제11회 사규심의위원회(수정의결) 반영
 - 제2조(적용범위)‘안전관리에 관하여’→‘열공급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’
 - 제6조(안전관리조직)2호,3호‘임명하는 자’→‘정하는 자’
 - 제6조(안전관리조직)5호‘각 과장으로 하며’→‘실무경험이 풍부한 과장급으로 하며’
 - 제39조(징계)‘제규정’→‘인사규정’

3. 진행현황 및 추후절차

- 가.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안전관리규정 제정(안) 보고 -‘17.9.6
- 나. 제11회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-‘17.10.23
- 다. 제11회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-‘17.10.25
- 라.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안전관리규정 제정 보고(사장방침)
- 마.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안전관리규정 공포시행
- 바.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안전관리규정 공시
- 사.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안전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변경신고

- 붙 임: 1.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안전관리규정 전문
 2.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안전관리규정 제정(안) 보고(환경안전-658)
 3. 제11회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(전략기획-2472). 끝.

